

이의 제기 중 귀하의 권리

"적절한 통지"에 대한 권리

평이하고 명확하며 전문적이지 않은 언어로 된 서면 통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통지는 귀하가 선호하는 언어와 귀하의 권한을 위임 받은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이 선호하는 언어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귀하가 선택한 방법으로 정보를 받을 권리

우편, 이메일 또는 기타의 귀하가 선택한 방법으로 정보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리저널센터에서 제안한 결정 또는 조치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할 권리

리저널센터의 결정이나 조치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의 제기 신청은 리저널센터의 결정 또는 조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현재 받고 있는 서비스를 유지할 권리

이의 제기 기간 동안 귀하의 자격 또는 현재 받고 있는 서비스를 계속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보류 중 지원"이라고 합니다. 귀하의 자격 또는 서비스를 유지하려면 이의 제기 요청은 귀하가 조치 통지서(NOA)를 받은 후 조치가 취해지기 30일 전에 발달장애서비스부에 접수되거나 해당일의 소인이 찍혀 있어야 합니다.

귀하의 기록에 액세스할 권리

리저널센터의 귀하에 관한 기록에 접근할 권리가 있습니다. 즉 리저널센터의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의 기록 사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리저널센터는 귀하에게 복사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을 지불할 여유가 없다면 리저널센터에 알리고 무료로 기록 사본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하십시오. 기록 신청 후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기록에 액세스해야 합니다.

이의 제기 절차에 참여 여부를 결정할 권리

이용하려는 이의 제기 절차의 부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즉 비공식 회의, 조정 또는 청문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들 부분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하도록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비공식 회의, 조정 또는 청문회에 참석하는 방법(전화, 화상 또는 대면)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하기 위해 언제든지 이의 제기 신청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편리한 시간과 장소를 선택할 권리

귀하가 참석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에서 비공식 회의, 조정 및 청문회에 참석할 권리가 있습니다.

도움이나 지원을 받을 권리

귀하는 다른 사람이 귀하를 돕거나 지원하도록 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들은 변호사 또는 기타의 사람일 수 있습니다. 기타의 사람은 귀하의 위임 대리인이거나 친구 또는 가족일 수 있습니다. 귀하가 동의하면 권한을 부여 받은 귀하의 대리인이 귀하의 이의 제기에 대한 정보를 받게 됩니다.

이의 제기 준비를 도와줄 변호사나 다른 사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의 이의 제기 중 변호사를 참석시킬 수 있습니다. 비공식 회의, 조정 또는 청문회에 변호사를 참석시키려면 사전에 리저널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리저널센터는 귀하의 변호사가 참석하지 않거나 귀하가 변호사가 아닌 한 이의 제기 절차 중 어떤 부분에도 리저널센터측 변호사를 참석시킬 수 없습니다.

더 많은 시간을 요청할 권리

시간이 더 필요한 경우 시간을 더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연기라고 합니다. 연기는 이의 제기 해결 시간을 연장할 수 있지만 청문회가 열리기 전에 요청해야 합니다.

처음 연기 요청시에는 이유를 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추가 연기를 요청하는 경우 요청에 대한 이유(이를 "합당한 사유"라고 함)를 제시해야 합니다.

다른 조정자 또는 청문회 담당관을 요청할 권리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다른 조정자 또는 청문회 담당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조정 또는 청문회가 시작되기 전에 요청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의 제기에 참석할 권리

귀하는 이의 제기의 모든 부분에 참석할 권리가 있습니다.

청문회 공개 여부를 결정할 권리

청문회는 대중에게 공개됩니다. 일반 대중이 청문회에 참석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 청문회 담당관에게 청문회 비공개를 원한다고 알리십시오. 이는 청문회 전에 서면으로 하거나 청문회가 시작되기 직전에 서면 또는 구두로 할 수 있습니다.

공정한 청문회를 받을 권리

귀하는 청문회에서 자유롭게 공개적으로 발언할 권리가 있습니다. 청문회 담당관은 귀하와 리저널센터가 사실을 공유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통역사에 대한 권리

선호하는 언어가 영어가 아닌 경우 효율적이고 정확하며 중립적으로 통역할 수 있는 통역사를 이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의 제기 신청 양식에서 통역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 제기의 모든 부분에 대해 통역사가 제공됩니다.

청문회 담당관에게 정보를 제공할 권리

청문회 담당관에게 귀하의 이의 제기를 뒷받침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를 증거라고 합니다. 귀하와 귀하가 선택한 다른 사람들도 청문회 담당관에게 구두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증인이라고 합니다. 또한 청문회 사무소에 서면 문서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리저널센터의 입장 진술서 및 증거 자료는 귀하가 선호하는 언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귀하의 권한을 위임 받은 대리인이 있을 경우 그 대리인이 선호하는 언어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리저널센터에서 이러한 문서의 번역본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이를 귀하에게 통지하고 영어 사본을 제공하며 문서를 번역하려 노력하고 있음을 알리고 청문회를 계속할 것을 요청할 것입니다. 이러한 정보는 청문회가 열리기 최소 2영업일 전에 받아야 합니다.

리저널센터 증인에게 질문할 권리

리저널센터는 청문회에서 증인이 증언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리저널센터의 증인에게 질문할 권리가 있습니다.